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 585 호 2017. 6. 30(금)**

## 조 례

남해군조례 제2239호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남해군조례 제2240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남해군조례 제2241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남해군조례 제2242호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6
남해군조례 제2243호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남해군조례 제2244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남해군조례 제2245호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
남해군조례 제2246호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3
남해군조례 제2247호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27

## 고 시

제2017 - 6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고시	28
제2017 - 68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문	31

## 공 고

제2017 - 665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제2017 - 668호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재공고·열람	53
제2017 - 67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4
제2017 - 67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5
제2017 - 67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6
제2017 - 67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7
제2017 - 678호	남해군관리계획(주차장, 공원및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공고·열람	58
제2017 - 681호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61
제2017 - 682호	남해군계획시설(이순신순국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열람	70

회 람									
-----	--	--	--	--	--	--	--	--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239호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40호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증명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2) 무적자사실확인	1통	1,000	
(3) 독자사실확인	1통	1,000	
(4) 부재자사실확인	1통	1,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소유사실확인	1통	1,000	
(2) 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	1통	3,000	
(3) 가축자가사육 확인	1통	1,000	
(4) 관상수목자가생산 확인	1통	5,000	
(5) 리장재직사실확인	1통	1,000	
(6) 경작사실확인	1통	1,000	
(7) 보세건물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1,000	
(8)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	
(9) 실수요자 사실확인	1통	1,000	
(10) 조립실적확인	1통	1,000	
(11) 식품제조보고사실확인	1통	1,000	
(12) 폐선헤체확인	1통	1,000	
(13)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1통	1,000	
(14) 거주사실확인	1통	1,000	

# 남 해 군 공 보

(6) 제 585 호

2017년 6월 30일

(15) 호(제)적멸실확인	1통	1,000
(1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통	600
(17) (식품공중) 영업허가, (휴·폐업등)사실증명	1통	500
(18) 의료기관 약국(휴·폐업등)사실증명	1통	1,000
<b>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b>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재교부	1필지	300
(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	1필지	400
(4)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
(6)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
(7)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
(8)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00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1필지당	1,500
<b>4. 지방세에 관한 증명</b>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1통	800
<b>5. 회계에 관한 사항</b>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
(3) 원천징수공제 증명	1통	1,000
(4) 물품납부 실적증명	1통	1,000
(5) 공시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확인원	1통	1,000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
(7)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1,000



6.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	1통	1,000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	1통	1,000	
7. 기타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1,000	
(2)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500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 일반행정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1필지당	800	
(2)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속)신청	1건	3,000	
(3) 국·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1건	5,0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	
(5)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건	7,0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당	8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당	800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	
(2)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1건	500	
(3)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	1건	1,000	
(4) 어획물 양육(전적)허가 신청	1건	1,000	
(5)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5,500	
(6)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	
(7)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3,000	

# 남 해 군 공 보

(8) 제 585 호

2017년 6월 30일

(8)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800
(9)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
(10)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
(11)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
(12)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4,200
(1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14) 연안어업 허가	1건	2,500
(15)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
(16)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200
(1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18)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19)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1건	10,000
(20)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
(21)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22)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800
(23) 어업신고	1건	1,600
(24)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
(25)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26)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27) 어업권(지분)이전 변경등록	1건	1,500
(28)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29) 관리선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	1건	1,600
(30)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31)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	1건	2,500
(32)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
(33)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34)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	1건	2,000
(35)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

(36)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37)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3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신청	1건	800
(39)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
(40)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
(41) 한시어업 허가	1건	2,000
(42) 한시어업 허가연장	1건	2,000
(43)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
(4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45)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46)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47)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
(48)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49)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
(5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5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1건	2,000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1건	1,000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000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등록필증 등)	1건	1,000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
(2) 전기보안담당자 대행 승인	1건	1,000
(3)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1건	500
(4) 청과시장 경매사 임명승인 신청	1건	1,000
(5)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 남 해 군 공 보

(10) 제 585 호

2017년 6월 30일

(6)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주유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20,000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20,000
•일반·용제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30,000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1건	10,000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10,00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7)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1건	100,000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500
(2)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의 용지비 공사비의 보상비 제외 1/1000
(3)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1,000
(6)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7)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1건	1,000
(8) 소하천공사(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000
(9)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500
(10)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11)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13)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14)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
(1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6)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17)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1건	7,000
(18)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19)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	1건	10,000
(20) 법인 합병인가 신청	1건	10,000
(21) 건설업 상속인가 신청	1건	10,000
(2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2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5.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
(3)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4)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5)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9)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10)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
(11) 위생처리업		
•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	1건	2,300
•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1건	1,200
(12)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2,300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1,200

# 남 해 군 공 보

(12) 제 585 호

2017년 6월 30일

(13) 기 타		
(11) ~ (12) 사항 중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신고 수수료에 준함		
(14)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
(15)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16)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1건	40,000
<b>6.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b>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4)노래연습장·비디오물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1건	20,000
(5)노래연습장·비디오물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고)	1건	5,000
<b>7. 상수도관계</b>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수수료	1건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건	2,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신규1건	4,000
	갱신1건	2,000
(4)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40mm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mm이상	4,000

남 해 군 공 보

2017년 6월 30일

제 585 호 (13)

(5)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40mm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mm이상	4,000
(6)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40mm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mm이상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40mm미만	1,000
	계량기 구경40mm이상	2,000
(8) 정수처분 해체수수료	급수관 구경40mm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mm이상	4,000
8.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법 인 1건	30,000
	중개사 1건	2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9. 체육시설업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10. 정보통신관계		
(1) 공사의 사용전검사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20,000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30,000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40,000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건	60,000
(2) 재검사수수료		
•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액의 50퍼센트		
11. 도로명주소 관계		
(1)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신청	1건	해당연도 단가계약 금액

# 남 해 군 공 보

(14) 제 585 호

2017년 6월 30일

(2)도로명주소 대장 등본	1건	500
(3)도로명주소 대장 열람	1건	300
(4)인터넷에 의한 도로명주소 대장등본 발급·열람 •등본사본 출력물 5면 초과 시 1면마다 50원 추가	1건	300



남해군 조례 제2241호

###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제1호 바를 삭제하고 현행 사를 바로 하며, 제2호 중 마의 대상건축물 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 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242호

##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자금의 대여
2.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3.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고용 촉진)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그 밖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43호

###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 남 해 군 수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긴급복지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제13호 중 “법 시행령”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제1항 “법 ”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44호

##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45호

##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존에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제8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46호

##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 (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sup>2</sup> )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기본지상적설하 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 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sup>2</sup>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sup>2</sup>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남해군 조례 제2247호

##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6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변경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1. 붕괴위험지역 변경현황

구분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당초	북남치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산123번지)	붕괴위험	C	2,0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변경	북남치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산123번지)	붕괴위험	D	2,0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등급 조정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남해군 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남해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 : 2017. 6. 26.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가.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6.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3)

붙임 :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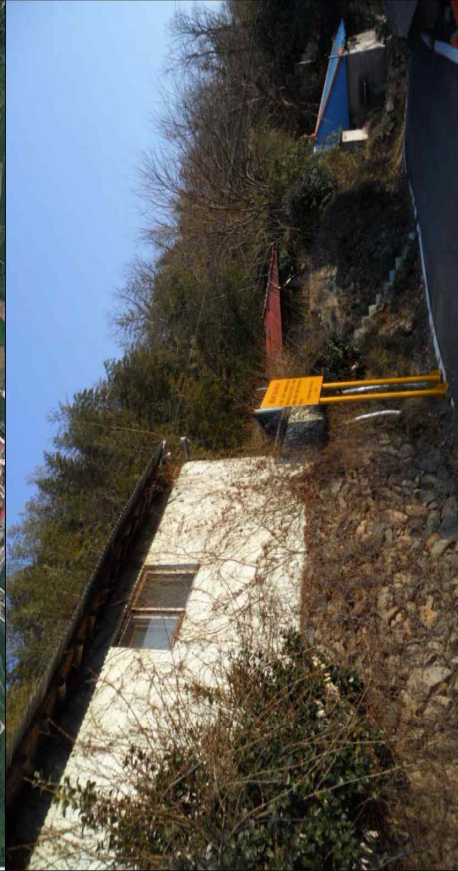
북남치지구 전체 위치도



북남치지구 위치 및 현황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위 성 위 치 도



현 황 도



남해군 고시 제2017 - 68호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 남 해 군 수

I.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474,353,441,077	483,954,320,463	323,796,544,425	160,157,776,038
일 반 회 계	402,554,989,057	410,040,584,626	287,444,082,465	122,596,502,161
특 별 회 계	71,798,452,020	73,913,735,837	36,352,461,960	37,561,273,877
상 수도 특 별 회 계	17,555,185,040	17,828,120,438	15,997,950,240	1,830,170,198
의 료 급 여 기 금	676,158,000	695,723,490	638,884,470	56,839,02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232,712,000	2,220,179,128		2,220,179,128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78,447,000	800,152,848	493,588,400	306,564,448
환 경 기 초 시 설	23,550,544,570	25,365,005,814	18,790,962,980	6,574,042,834
장기미집행도시계 획 시설대지보상	434,039,410	433,179,540	431,075,870	2,103,670
청 사 건 립	26,571,366,000	26,571,374,579		26,571,374,579

# 남 해 군 공 보

(32) 제 585 호

2017년 6월 30일

## 2.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474,353,441,077	485,153,417,949	483,954,320,463	1,199,097,486
일 반 회 계	402,554,989,057	411,175,979,812	410,040,584,626	1,135,395,186
특 별 회 계	71,798,452,020	73,977,438,137	73,913,735,837	63,702,300
상 수 도	17,555,185,040	17,877,573,438	17,828,120,438	49,453,000
의 료 급 여 기 금	676,158,000	695,723,490	695,723,49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2,232,712,000	2,220,179,128	2,220,179,128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778,447,000	800,152,848	800,152,848	
환 경 기 초 시 설	23,550,544,570	25,379,255,114	25,365,005,814	14,249,3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 지 보 상	434,039,410	433,179,540	433,179,540	
청 사 건 립	26,571,366,000	26,571,374,579	26,571,374,579	

## 3.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74,353,441,077	323,796,544,425	88,078,253,870 (2,515,922,000)	62,478,642,782
일 반 회 계	402,554,989,057	287,444,082,465	82,718,605,280 (2,515,922,000)	32,392,301,312
특 별 회 계	71,798,452,020	36,352,461,960	5,359,648,590	30,086,341,470
상 수 도	17,555,185,040	15,997,950,240	1,312,618,280	244,616,520
의 료 급 여 기 금	676,158,000	638,884,470		37,273,53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2,232,712,000		140,000,000	2,092,712,0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778,447,000	493,588,400		284,858,600
환 경 기 초 시 설	23,550,544,570	18,790,962,980	3,904,926,640	854,654,9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 지 보 상	434,039,410	431,075,870	2,103,670	859,870
청 사 건 립	26,571,366,000			26,571,366,000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60,157,776,038 (2,515,922,000)	39,600,184,750 (1,795,922,000)	6,807,146,160	39,155,000,960 (720,000,000)	3,564,598,822	71,030,845,346
일 반 회 계	122,596,502,161 (2,515,922,000)	37,998,757,760 (1,795,922,000)	6,391,601,650	35,812,323,870 (720,000,000)	3,492,414,160	38,901,404,721
특 별 회 계	37,561,273,877	1,601,426,990	415,544,510	3,342,677,090	72,184,662	32,129,440,625
상 수 도	1,830,170,198	219,097,960	323,804,510	769,715,810		517,551,918
의료급여기금	56,839,020					56,839,02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2,220,179,128	140,000,000				2,080,179,128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06,564,448				35,600	306,528,848
환경기초시설	6,574,042,834	1,240,225,360	91,740,000	2,572,961,280	72,149,062	2,596,967,13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103,670	2,103,670				
청 사 건 립	26,571,374,579					26,571,374,579

II.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1. 예산이용 : 없음

2. 예산전용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36건	8,786,813,000	535,168,000	535,168,000

3. 예산이체 : 없음

Ⅲ.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26건	3,117,947,000	587,858,730	2,510,627,700	19,460,570

Ⅳ. 재무제표 요약

(단위 : 원)

연도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16년	1,905,116,558,730	8,627,130,303	1,896,489,428,427	244,482,028,366	320,397,078,773	(75,915,050,407)
2015년	1,851,099,050,864	11,819,597,063	1,839,279,453,801	236,546,831,173	299,322,109,661	(62,775,278,488)
총 감	54,017,507,866	(3,192,466,760)	57,209,974,626	7,935,197,193	21,074,969,112	(13,139,771,919)

Ⅴ. 채권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3,264,909,190	27,407,430	271,505,210	3,020,811,410
일 반 회 계	2,954,233,510	1,926,740	205,869,280	2,750,290,970
기 타 특 별 회 계	310,675,680	25,480,690	65,635,930	270,520,44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23,541,760	25,480,690	64,830,690	84,191,76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87,133,920		805,240	186,328,680

VI. 채무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계	4,983,200,000		4,983,200,000	
일반회계	300,000,000		300,000,000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4,683,200,000		4,683,200,000	

VII. 성과보고서 요약

(단위 : 개)

구분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미달성 (100% 미만)
합계	18	81	232	22	162	48

VIII. 기금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12,205,296,138	771,727,700	744,209,380	12,232,814,45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108,611,687	563,100	2,900,000	106,274,787
중소기업육성기금	1,236,418,457	200,714,860	11,580,350	1,425,552,967
재난관리기금	871,022,053	296,453,390	467,622,630	699,852,813
사회복지기금	2,067,665,084	41,121,440	43,538,000	2,065,248,524
양성평등기금	728,614,060	113,581,270	13,000,000	829,195,330
식품진흥기금	42,468,750	20,394,270	9,500,000	53,363,020
마늘명품화기금	7,150,496,047	98,899,370	196,068,400	7,053,327,017

IX. 공유재산 및 물품

(단위 : 원)

구 분	공 유 재 산		정 수 물 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9,352	436,164,331,375	865	6,314,364,000
토 지	25,754	162,842,182,118		
건 물	324	87,260,236,948		
기 타	53,274	186,061,912,309	865	6,314,364,00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665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 조항,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을 특례 조항 적용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사항 완화, 추가, 삭제(안 제26조 제7호 내지 제23호)
  - 별표 7 다, 별표 8 나, 별표 9 나, 별표 10 나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
  - 별표 22 파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추가
  - 별표 23 삭제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특례조항 신설(안 별표 18호)

- 별표 18 바목 수정 및 더목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촌융복합시설 중에 해당 시설물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 및 예치방법 명확화 신설(안 제25조 제3항)

- 이행보증금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는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함.

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31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건물 외부에 창살이나 담장 등이 있는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으로 완화

마.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율 특례조항 신설(안 제41조의6, 제48조의1 )

-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폐율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용적률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

바. 회의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52조 제8항 및 제1호)

-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음.
- 위원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만 심의할 수 있음.

사. 기타 군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13, 팩스 860-3739, e-mail : dongak@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32조” 를 “제40조” 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품셈에 따라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는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제26조제2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병원” 을 “건물 외부에 창살이나 담장 등 있는 정신병원” 으로 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제8항 본문 중 “세 차례” 를 “두 차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만 심의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8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9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사목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건축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2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이 조례 별표 18 제1호 자목 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남해군 건축조례」 제32조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 ----- ----- ----- ----- ----- ----- ----- -----</p> <p>제32조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p> <p>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p> <p>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③ 이행보증금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p>

제2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문 생략)

1. ~ 22. (생략)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 병원

<신설>

<신설>

제52조(회의운영) ①~⑦(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는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제2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22. (현행과 같음)

<삭제>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건물 외부에 창살이나 담장 등 있는 정신병원 및 격리 병원

제41조의6(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8조의1(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회의운영) ①~⑦(현행과 같음)

⑧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세 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위원회가 네 차례 이상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략)

⑧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위원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만 심의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7 - 668호

###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재공고·열람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재공고·열람하오니 군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6일

###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가. 위 치 : 남해군 전역
  - 나. 면 적 : 357.677km<sup>2</sup>
  - 다. 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 : 관리지역의 재정비
    - 용도지구 : 취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재정비
    - 기반시설 : 기반시설의 재정비
3. 재열람 사유 : 경상남도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 재공고·열람
4. 관련도서 : 게재 생략 (남해군 도시건축과 비치)
5.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67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성명)	정홍O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소하천명		개린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749번지(146-103번지 인근)
	면적	1㎡
	기간	2017. 5. 23.~2018. 8. 30.
	목적 및 사유	일반주택 배수관로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17 - 67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미래전략사업단장)		
	주소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상신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2외 1필지		
	면적	18.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7. 6. 8.~영구		
	목적 및 사유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오수관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17 - 673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봉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371번지 일원		
	면적	16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7. 6. 12.~영구		
	목적 및 사유	위험교량 재가설		

남해군 공고 제2017 - 674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한국 농어촌공사 서부지사장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소하천명		우지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면 평산리 2428-2번지		
	면적	10,678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17. 6. 21.~2021. 12. 31.		
	목적 및 사유	농업용 저수지 신설		

남해군 공고 제2017 - 678호

**남해군관리계획(주차장, 공원및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공고·열람**

남해군관리계획(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남해군 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남 해 군 수**

-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주차장, 공원및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가. 군관리계획(주차장, 공원및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 1)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49번지 일원
    - 2) 규 모
      - 주차장 : A=35,421㎡
      - 공 원 : A=18,006㎡
  - 나. 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붙임1>
  -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4.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 5. 의견제출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1>

군관리계획(주차장, 공원및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249번지 일원	-	35,421	35,42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신설 (A=35,421㎡)	○ 남해군 주요 관광자원인 금산에 급증하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코자 금회 군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코자 함

나.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	신전 공원	문화 공원	이동면 무림리 산166-1번지 일원	-	18,006	18,00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	신전 공원	신설 (A=18,006㎡)	○ 남해 금산 및 보리암 탐방객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편의 시설 제공으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공원 조성으로 남해군 금산일대 자연자원의 관람과 보호에 기여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지역축제 참여 기회 제공하고자 금회 군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코자 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8,006	100.0	
기반시설	2,319	12.8	
편익시설	9,572	53.2	
조경시설	2,024	11.2	
녹 지	4,091	22.8	

나. 시설별 조서

시설명	시설 번호	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18,006	1,400	
기반시설		2,319	-	
도로	1	900	-	
산책로	2	368	-	
광장	3	1,051	-	
편익시설		9,572	-	
주차장	4	3,164	-	
휴게 및 일반음식점	5	5,521	1,400	
전망대	6	887	-	
조경시설		2,024	-	
조경시설	7	2,024	-	
녹 지		4,091	-	
조성녹지	8	747	-	
원형녹지	9	3,344	-	

남해군 공고 제2017 - 681호

##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2. 제정이유

- 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각종 축제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

### 3. 근거 및 내용

- 가. 근 거 :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3항
- 나. 내 용 :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

### 4. 주요내용

- 가. 목 적(안 제1조)
  - 1) 축제의 사전심사 및 평가방법과 절차 규정
  - 2)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
- 나. 정의(안 제2조)
  - 1)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용어의 뜻 규정

2) 규정내용

- 가) 사전심사 :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
- 나) 사후평가 :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거나 지원 받기 위하여 자력으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

다. 사전심사(안 제3조)

- 1) 사전 심사의 시기(10월)와 수시 심사 규정
- 2) 정기적 개최 축제와 신규 축제의 구분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
- 3) 사전심사의 지표 및 평가표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사후평가(안 제4조)

- 1) 평가의 기한 및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구분에 관한 사항 규정
- 2) 평가방식별 등급과 예산 반영기준 규정

마. 현장점검(안 제5조)

- 1) 위원회의 축제 준비 및 관리·운영 등 현장점검 의무 규정
- 2) 현장 점검반의 구성과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이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참고사항

나.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2) 연락처 : (전화)055-860-8602, (팩스)055-860-3748, (email) [jp8701@korea.kr](mailto:jp8701@korea.kr)

붙 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의 건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2. 의견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는 남해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사후평가”는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거나 지원 받기 위하여 자력으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심사) ① 사전심사는 매년 10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축제의 사전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신규(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축제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③ 사전심사는 별표의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사후평가) ① 사후평가는 평가 대상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한다.

② 사후평가는 축제에 소요된 경비의 규모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상대평가는 축제에 소요된 경비(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총 경비(이하 “소요경비”라 한다.))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며, 절대평가는 소요경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방식별 등급비율과 예산반영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평가방식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상대평가	등급비율	5% 미만	15% 미만	60% 미만	15% 이상	5% 이상
	예산반영	증액가능	증액가능	현행유지	10%이상 삭감	반영제외
절대평가	예산반영	증액가능	증액가능	현행유지	10%이상 삭감	반영제외

제5조(현장점검) ①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와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은 각 축제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점검에 참여한 위원은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서식의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

#### 1.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제5조제1항)

구 분	심사항목	심 사 지 표	평가배점	평가결과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	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1-2. 다른 축제 등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 되지 않는가?	5		
		1-3. 축제 구성이 적절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1-4. 축제의 도입(시행) 목적과 추진 주체의 의지가 명확하고 건전한가?	5		
		소 계	20		
	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	2-1. 사업목적과 단위계획이 서로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단위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10		
		소 계	15		
	운영 및 관리 (25점)	축제운영 및 관리 적정성 (25)	3-1.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는가?	10	
			3-2. 직전 축제의 운영·관리상 오류를 시정하였는가?	5	
3-3. 축제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소 계		25			
성과 및 환류 (40점)	성과달성 및 축제평가 결과의 환류 (40)	4-1. 계획한 인적·물적 규모, 간접효과 등 사업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15		
		4-2. 준비 및 운영 주체의 축제 결과에 대한 수용 자세가 건전한가?	5		
		4-3.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10		
		4-4.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시행 구조 개선에 환류하여 반영하였는가?	5		
		4-5. 관광객과 주민의 대체적인 여론을 수집하고 이에 따른 사안별 후속대책을 강구하였는가?	5		
	소 계	40			
<b>합 계</b>		100			

2. 신규 또는 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제5조제1항)

구 분	심사항목	심 사 지 표	평가배점	평가결과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	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0		
		1-2. 다른 축제 등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1-3. 축제 구성이 적절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1-4. 축제의 도입(시행) 목적과 추진 주체의 의지가 명확하고 건전한가?	10		
		소 계	35		
	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	2-1. 사업목적과 단위계획이 서로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2-2. 단위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10		
		소 계	20		
	지역특성 구현 및 주민생업 지원	주민생업과 문화적 정서 및 지역산업 과의 연계성	3-1. 주민의 생업과 생활문화 특성이 축제와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10	
			3-2. 지역산업 또는 정서가 축제와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10	
소 계		20			
지역주민 화합 및 단합의지	지역주민의 축제의지 및 자발적 참여	4-1. 비용의 부담, 재능기부 등 지역주민의 축제 시행 주체의식이 있는가?	15		
		4-2. 주민 또는 관계 구성원 등의 다수가 축제 개최에 동의하고, 참여 의지가 분명한가?	10		
	소 계	25			
<b>합 계</b>		100			

[별지서식]

###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점검위원 : (서명 또는 인)

#### 1. 축제개요

축제명			
장 소		기 간	
주 최		후 원	
대표자		사업비	

#### 2. 분야별 점검 사항

가. 축제의 성장성 및 잠재력

직전대비 성장성	
향후 성장잠재력	

나.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등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관광객 참여	축제 주제 및 지역 특성과의 연계성

다.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설명	접근 편리성	이용 편의성	운영 및 관리실태

라. 축제 홍보의 효율성 및 적절성

분 야	홍보방법	홍보내용	적절성

마. 축제 운영 안전관리 체계

실행사항	취약점	기 타

바. 축제의 매력 및 경제적 파급 효과

- 1) 축제의 매력
- 2) 경제적 효과

남해군 공고 제2017 - 682호

## 남해군계획시설(이순신순국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 열람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의 남해군계획시설(이순신순국공원)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8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군계획시설(이순신순국공원) 사업
- 명 칭: 이순신순국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89,869㎡ → 89,401㎡(감: 468㎡)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당초	변경	구성비 (%)	건축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89,869	<b>89,401</b>	100.0	1,552.05	<b>1,951.44</b>	1,652.82	<b>2,024.35</b>	
교양시설	43,206	<b>43,123</b>	48.3	414.95	<b>803.52</b>	466.73	<b>829.75</b>	
휴양시설	4,518	<b>4,680</b>	5.3	-	-	-	-	
편익시설	26,915	<b>26,578</b>	29.7	1,137.10	<b>1,139.05</b>	1,186.09	<b>1,187.83</b>	
조경시설	15,230	<b>15,020</b>	16.7	-	<b>8.87</b>	-	<b>6.77</b>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주 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성 명: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착수예정일: 2012년 02월
- 준공예정일: 당초 - 2016년 12월 31일  
                  변경 - 2017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별첨

7.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실음생략)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장 소: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

9. 기타 의견이 있는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055-860-341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1,326	89,401	89,869	89,401					
1	고현면	차면리	0-1	0-1	가	가	55	55	55	55	국토교통부	국			
2	고현면	차면리	113	113	답	답	737	737	737	737	남해군	공			
3	고현면	차면리	650	650-1	전	전	486	158	157	158	남해군	공			
4	고현면	차면리	651	651	전	전	387	387	387	387	남해군	공			
5	고현면	차면리	651-1	651-1	전	전	869	869	869	869	남해군	공			
6	고현면	차면리	651-2	651-2	전	전	1,421	1,421	1,421	1,421	남해군	공			
7	고현면	차면리	651-3	651-4	전	전	906	517	517	517	남해군	공			
8	고현면	차면리	652	652-1	전	전	469	176	175	176	남해군	공			
9	고현면	차면리	653-1	653-1	답	답	701	701	701	701	남해군	공			
10	고현면	차면리	653-2	653-2	도	도	112	112	112	112	남해군	공			
11	고현면	차면리	654-1	654-1	답	답	198	198	198	198	남해군	공			
12	고현면	차면리	654-2	654-2	답	답	205	205	205	205	남해군	공			
13	고현면	차면리	655-1	655-1	답	답	800	800	800	800	남해군	공			
14	고현면	차면리	655-2	655-2	도	도	13	13	13	13	남해군	공			
15	고현면	차면리	656-2	656-2	도	도	86	86	86	86	남해군	공			
16	고현면	차면리	656-1	656-3	답	답	1,183	1,172	1,171	1,172	남해군	공			
17	고현면	차면리	658	658	답	답	290	262	290	262	남해군	공			
18	고현면	차면리	659	659	답	답	1,729	1,715	1,729	1,715	남해군	공			
19	고현면	차면리	660-1	660-1	답	답	291	291	291	291	남해군	공			
20	고현면	차면리	660-2	660-2	답	답	179	179	179	179	남해군	공			
21	고현면	차면리	660-3	660-3	답	답	426	426	426	426	남해군	공			
22	고현면	차면리		662-7		답		33		33	남해군	공			
23	고현면	차면리	688-2	688-3	답	답	1,035	801	801	801	남해군	공			
24	고현면	차면리	689-1	689-1	도	도	7	7	7	7	남해군	공			
25	고현면	차면리	689-2	689-2	답	답	1,197	1,197	1,197	1,197	남해군	공			
26	고현면	차면리	690	690	답	답	711	711	711	711	남해군	공			
27	고현면	차면리	691-1	691-1	도	도	79	79	79	79	남해군	공			
28	고현면	차면리	691-2	691-2	답	답	1,623	1,623	1,623	1,623	남해군	공			
29	고현면	차면리	692-1	692-1	답	답	638	638	638	638	남해군	공			
30	고현면	차면리	692-2	692-2	답	답	648	648	648	648	남해군	공			
31	고현면	차면리	692-3	692-3	도	도	76	76	76	76	남해군	공			
32	고현면	차면리	692-4	692-4	도	도	93	93	93	93	남해군	공			
33	고현면	차면리	692-5	692-5	답	답	20	20	20	20	남해군	공			
34	고현면	차면리	693	693	답	답	132	132	132	132	남해군	공			
35	고현면	차면리	694-1	694-1	답	답	840	840	840	840	남해군	공			
36	고현면	차면리	694-2	694-2	답	답	618	618	618	618	남해군	공			
37	고현면	차면리	694-3	694-3	도	도	36	36	36	36	남해군	공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6월 30일

제 585 호 (7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8	고현면	차면리	695	695	답	답	783	783	783	783	남해군	공			
39	고현면	차면리	696-1	696-1	답	답	932	932	932	932	남해군	공			
40	고현면	차면리	696-2	696-2	답	답	615	615	615	615	남해군	공			
41	고현면	차면리	697	697	답	답	721	721	721	721	남해군	공			
42	고현면	차면리	698	698	답	답	615	615	615	615	남해군	공			
43	고현면	차면리	698-1	698-1	답	답	106	106	106	106	남해군	공			
44	고현면	차면리	699-1	699-1	답	답	143	143	143	143	남해군	공			
45	고현면	차면리	710-1	710-1	답	답	395	395	395	395	남해군	공			
46	고현면	차면리	711	711	답	답	75	46	75	46	남해군	공			
47	고현면	차면리	712-2	712-2	답	답	139	11	80	11	남해군	공			
48	고현면	차면리	713	713	답	답	100	23	100	23	남해군	공			
49	고현면	차면리	714	714	답	답	284	284	284	284	남해군	공			
50	고현면	차면리	714-1	714-1	전	전	251	251	251	251	남해군	공			
51	고현면	차면리	715	715	답	답	1,064	1,064	1,064	1,064	남해군	공			
52	고현면	차면리	716	716	답	답	727	727	727	727	남해군	공			
53	고현면	차면리	717	717	답	답	704	704	704	704	남해군	공			
54	고현면	차면리	718	718	답	답	975	975	975	975	남해군	공			
55	고현면	차면리	719	719	답	답	1,296	1,296	1,296	1,296	남해군	공			
56	고현면	차면리	720-1	720-1	답	답	512	512	512	512	남해군	공			
57	고현면	차면리	720-2	720-2	답	답	479	479	479	479	남해군	공			
58	고현면	차면리	720-3	720-3	도	도	23	23	23	23	남해군	공			
59	고현면	차면리	721	721	답	답	803	803	803	803	남해군	공			
60	고현면	차면리	722	722	답	답	932	932	932	932	남해군	공			
61	고현면	차면리	723	723	답	답	2,770	2,770	2,770	2,770	남해군	공			
62	고현면	차면리	723-1	723-1	답	답	1,888	1,888	1,888	1,888	남해군	공			
63	고현면	차면리	723-2	723-2	전	전	241	241	241	241	남해군	공			
64	고현면	차면리	724	724	도	도	109	109	109	109	남해군	공			
65	고현면	차면리	724-1	724-1	답	답	612	612	612	612	남해군	공			
66	고현면	차면리	724-2	724-2	답	답	2,307	2,307	2,307	2,307	남해군	공			
67	고현면	차면리	724-3	724-3	답	답	1,588	1,588	1,588	1,588	남해군	공			
68	고현면	차면리	724-4	724-4	도	도	48	48	48	48	남해군	공			
69	고현면	차면리	724-5	724-5	답	답	443	443	443	443	남해군	공			
70	고현면	차면리	724-6	724-6	유	유	253	253	253	253	기획재정부	국			
71	고현면	차면리	724-7	724-7	제	제	576	576	576	576	기획재정부	국			
72	고현면	차면리	724-8	724-8	창	창	111	111	111	111	남해군	공			
73	고현면	차면리	725-1	725-1	답	답	836	836	836	836	남해군	공			
74	고현면	차면리	725-2	725-2	도	도	119	119	119	119	남해군	공			
75	고현면	차면리	726	726	답	답	221	221	221	221	남해군	공			
76	고현면	차면리	727	727	전	전	291	291	291	291	남해군	공			
77	고현면	차면리	728	728	전	전	63	63	63	63	남해군	공			

# 남 해 군 공 보

(74) 제 585 호

2017년 6월 30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8	고현면	차면리	729	729	전	전	159	159	159	159	남해군	공			
79	고현면	차면리	730	730	전	전	139	139	139	139	남해군	공			
80	고현면	차면리	731	731	전	전	241	241	241	241	남해군	공			
81	고현면	차면리	732	732	전	전	122	122	122	122	남해군	공			
82	고현면	차면리	733-1	733-1	전	전	126	126	126	126	남해군	공			
83	고현면	차면리	733-2	733-2	전	전	132	132	132	132	남해군	공			
84	고현면	차면리	734	734	전	전	374	374	374	374	남해군	공			
85	고현면	차면리	735	735	전	전	281	281	281	281	남해군	공			
86	고현면	차면리	736	736	전	전	360	360	360	360	남해군	공			
87	고현면	차면리	737	737-1	임	임	33	7	7	7	남해군	공			
88	고현면	차면리	738	738	전	전	350	350	350	350	남해군	공			
89	고현면	차면리	739-1	739-1	전	전	162	162	162	162	남해군	공			
90	고현면	차면리	739-2	739-2	전	전	965	965	965	965	남해군	공			
91	고현면	차면리	740	740	임	임	96	96	96	96	남해군	공			
92	고현면	차면리	741	741-1	전	전	621	478	481	478	남해군	공			
93	고현면	차면리	742	742	전	전	830	830	830	830	남해군	공			
94	고현면	차면리	743	743	전	전	646	646	646	646	남해군	공			
95	고현면	차면리	743-1	743-1	도	도	48	48	48	48	남해군	공			
96	고현면	차면리	744	744-1	전	전	423	396	409	396	남해군	공			
97	고현면	차면리	745-3	745-3	도	도	316	316	316	316	남해군	공			
98	고현면	차면리	745-4	745-4	도	도	63	63	63	63	남해군	공			
99	고현면	차면리	745-1	745-6	임	임	2,338	1,359	1,357	1,359	남해군	공			
100	고현면	차면리	745-2	745-7	전	전	387	122	123	122	남해군	공			
101	고현면	차면리	745-5	745-8	임	임	284	140	135	140	기획 재정부	국			
102	고현면	차면리	746	746	답	답	213	213	213	213	남해군	공			
103	고현면	차면리	746-1	746-1	도	도	18	18	18	18	남해군	공			
104	고현면	차면리	747	747	답	답	77	77	77	77	남해군	공			
105	고현면	차면리	747-1	747-1	도	도	9	9	9	9	남해군	공			
106	고현면	차면리	748	748	전	전	55	55	55	55	남해군	공			
107	고현면	차면리	748-1	748-1	도	도	8	8	8	8	남해군	공			
108	고현면	차면리	749	749	잡	잡	67	67	67	67	남해군	공			
109	고현면	차면리	749-1	749-1	도	도	164	164	164	164	남해군	공			
110	고현면	차면리	750	750	전	전	66	66	66	66	남해군	공			
111	고현면	차면리	751	751-1	전	전	218	36	36	36	남해군	공			
112	고현면	차면리	805-7	805-12	도	도	6,732	284	286	284	기획 재정부	국			
113	고현면	차면리	809-4	809-4	구	구	1,634	1,606	1,634	1,606	기획 재정부	국			
114	고현면	차면리	816	816-4	구	구	2,853	1,172	1,172	1,172	기획 재정부	국			
115	고현면	차면리	822	822-1	도	도	1,643	211	211	211	기획 재정부	국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6월 30일

제 585 호 (7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16	고현면	차면리	833	833	도	도	221	221	221	221	기획재정부	국			
117	고현면	차면리	834	834-1	구	구	598	469	469	469	기획재정부	국			
118	고현면	차면리	835	835	체	체	169	169	169	169	기획재정부	국			
119	고현면	차면리	835-1	835-1	도	도	230	230	230	230	남해군	공			
120	고현면	차면리	835-6	835-10	도	도	31	9	8	9	남해군	공			
121	고현면	차면리	835-2	835-2	잡	잡	74	74	74	74	남해군	공			
122	고현면	차면리	835-3	835-3	구	구	82	82	82	82	남해군	공			
123	고현면	차면리	835-4	835-4	도	도	81	81	81	81	남해군	공			
124	고현면	차면리	835-5	835-5	도	도	232	232	232	232	남해군	공			
125	고현면	차면리	산10	산10	임	임	298	298	298	298	남해군	공			
126	고현면	차면리	산7-6	산7-6	임	임	573	573	573	573	남해군	공			
127	고현면	차면리	산7-7	산7-7	임	임	102	102	102	102	남해군	공			
128	고현면	차면리	산8	산8-1	임	임	694	83	89	83	남해군	공			
129	고현면	차면리	산9-2	산9-10	임	임	694	318	277	318	남해군	공			
130	고현면	차면리	산9-5	산9-5	임	임	1,289	1,289	1,289	1,289	남해군	공			
131	고현면	차면리	산9-1	산9-9	임	임	7,934	1,286	1,299	1,286	남해군	공			
132	고현면	차면리	85	85	답	답	915	915	915	915	남해군	공			
133	고현면	차면리	85-5	85-5	답	답	57	57	57	57	남해군	공			
134	고현면	차면리	86-1	86-1	답	답	830	830	830	830	남해군	공			
135	고현면	차면리	86-2	86-2	답	답	2,112	2,112	2,112	2,112	남해군	공			
136	고현면	차면리	87	87	답	답	1,084	1,084	1,084	1,084	남해군	공			
138	고현면	차면리	88	88	답	답	684	684	684	684	남해군	공			
139	고현면	차면리	88-1	88-1	답	답	99	99	99	99	남해군	공			
141	고현면	차면리	88-2	88-2	답	답	4,532	4,532	4,532	4,532	남해군	공			
143	고현면	차면리	88-4	88-4	체	체	522	522	522	522	기획재정부	국			
145	고현면	차면리	88-5	88-5	전	전	60	60	60	60	기획재정부	국			
146	고현면	차면리	88-6	88-6	임	임	63	63	63	63	기획재정부	국			
147	고현면	차면리	89	89	답	답	843	843	843	843	남해군	공			
148	고현면	차면리	89-1	89-1	답	답	3,230	3,230	3,230	3,230	남해군	공			
149	고현면	차면리	90	90	답	답	31	31	31	31	남해군	공			
151	고현면	차면리	96-5	96-5	답	답	323	323	323	323	남해군	공			
152	고현면	차면리	96-6	96-6	답	답	58	58	58	58	남해군	공			
153	고현면	차면리	97	97	답	답	2,995	2,995	2,995	2,995	남해군	공			
155	고현면	차면리	98	98-1	답	답	1,296	1,293	1,288	1,293	남해군	공			
157	고현면	차면리	99	99	답	답	156	156	156	156	남해군	공			
158	고현면	차면리	99-2	99-2	답	답	110	110	110	110	남해군	공			
159	고현면	차면리	103-2	103-2	답	답	152	152	152	152	남해군	공			

# 남 해 군 공 보

(76) 제 585 호

2017년 6월 30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62	고현면	차면리	103-3		답		879		2		국토 교통부	국			제척
163	고현면	차면리	104	104	답	답	709	709	709	709	남해군	공			
165	고현면	차면리	104-1	104-1	답	답	284	284	284	284	남해군	공			
166	고현면	차면리	104-2	104-2	답	답	957	957	957	957	남해군	공			
169	고현면	차면리	104-3	104-3	답	답	294	294	294	294	남해군	공			
171	고현면	차면리	104-4	104-4	답	답	1,794	1,794	1,794	1,794	남해군	공			
173	고현면	차면리	104-5	104-5	답	답	451	451	451	451	남해군	공			
174	고현면	차면리	104-6	104-6	답	답	110	110	110	110	남해군	공			
175	고현면	차면리	104-7	104-7	답	답	1,290	1,290	1,290	1,290	남해군	공			
176	고현면	차면리	104-8	104-8	답	답	7	7	7	7	남해군	공			
177	고현면	차면리	104-9	104-9	답	답	130	130	130	130	남해군	공			
178	고현면	차면리	104-10	104-10	답	답	593	593	593	593	남해군	공			
179	고현면	차면리	104-11	104-11	답	답	58	58	58	58	남해군	공			
180	고현면	차면리	104-12	104-12	답	답	411	411	411	411	남해군	공			
181	고현면	차면리	104-13	104-13	답	답	88	88	88	88	남해군	공			
182	고현면	차면리	104-14	104-14	답	답	32	32	32	32	남해군	공			
183	고현면	차면리	104-15		답		121		13		국토 교통부	국			제척
184	고현면	차면리	105	105	답	답	484	299	484	299	남해군	공			
185	고현면	차면리	105-1	105-1	답	답	96	21	96	21	남해군	공			
186	고현면	차면리	105-3	105-3	답	답	10	10	10	10	남해군	공			
187	고현면	차면리	106	106	답	답	259	259	259	259	남해군	공			
188	고현면	차면리	106-1	106-1	답	답	239	239	239	239	남해군	공			
189	고현면	차면리	106-2	106-2	답	답	87	87	87	87	남해군	공			
192	고현면	차면리	808-3	808-6	구	구	40	17	17	17	기획 재정부	국			
193	고현면	차면리	812-2	812-2	구	구	750	750	750	750	기획 재정부	국			